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결과 공개 의무 신설〉
■ 이견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022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결과 공개 의무 신설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견태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11. 7.
3. 회 부 일 : 2025. 11.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함)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과정 및 결과를 알 수 없어 투명성과 책임성 결여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5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결과 공개의무 신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 ④ (생략) <u><신설></u> ⑤ (생략)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제도로¹⁾, 2004년 광주광역시 북구에 최초로 도입된 이후 시행 여부가 지자체의 자율에 맡겨져 있었으나,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가 의무화되었음.

1)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매뉴얼」, 2025.6., p2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를 둘 수 있으며, 지역주민은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공청회·간담회,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지방 예산의 편성 등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렇게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음²⁾.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함³⁾.

2)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조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3)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예산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절차·방법(예시)>



주) 이외에도 환류 과정에서 모니터링 회의 등에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반영하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음.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매뉴얼」, 2025.6., p18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결과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⁴⁾.

4)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제6조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강원자치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7조(의견 제출)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5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과정 및 결과 등을 공개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방정부의 재정적 여건 등이 다른 상황에서 제도 운영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경우 지방정부의 행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정부의 행정 부담 및 재정적 차이 등을 감안하여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7